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6 선고 2022가단53250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 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1. 8. 14. 체결된 250,000,000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염우영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지위

가. 원고는 체납자 B(이하 “B”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피고는 B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입니다. B는 소외 C의 지인이고 피고는 C의 자녀로서 B로부터 2021.8.14. 250,000,000원의 금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합니다.) 받은 자입니다.(갑 제2호증 금전수취관련소명서(A), 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과세경위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과세 경위

원고 산하 종로세무서장(이하 “원고”라 합니다)은 B가 2020.11.02. 양도한 서울시 성동구 D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287,101,684원을 고지하였으며, 2021.5.14. 양도한 서울시 성북구 E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17,890,749원을 고지하였습니다. B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소 제기일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체납액이 있으며, 증가산금이 계속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4호증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서(서울시 성동구 D), 갑 제5호증 양도소득세 수정 신고서(서울시 성동구 D), 갑 제6호증 징수결정상세조회, 갑 제11호증 양도소득세 신고서(서울 성북구 E)).

<표 1 : B의 2022.10.25. 현재 국세채납액>

(단위:원)

관할서	세목	납부기한	채납액	귀속시기	납세의무 성립일
종로	양도소득세	2021.08.31.	321,167,180원	2020년	2020.11.30.
종로	양도소득세	2022.05.05.	19,082,150원	2021년	2021.05.31.
채납액 합계			340,249,330원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597 판결 참조)라고 하여, 비록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일은 2021.8.14.이고 그 전인 2020.11.30., 2021.05.31에 원고의 B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3. 사해행위

가. 현금증여

B는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주소에 거주하던 지인의, 자녀인 피고에게 2021.4.30.부터 2021.5.14.까지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이체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자금을 보관하면서 B에게 일부 지급하였고, 2021.5.14.에는 남아있던 2억5천만원을 B로부터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1.8.14.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2억5천만 원을 금원을 증여받았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갑 제2호증 금전수취관련소명서(A))

나. 사해행위 당시의 B의 채무초과 상태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할 당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차감한 순재산가액이 아래 표2와 같이 △42,684,730원으로 채무초과상태였습니다.

<표 2> 사해행위(2021.8.14.) 당시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단위: 원)

구분	세부내역	평가액	비고
적극재산	현금	250,000,000	이 사건 증여물건
	임대보증금(F)	12,000,000	갑 제8호증 금전수취관련소명서(F) 당초 보증금 중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소계	262,000,000	
소극재산	양도소득세(고지세액)	287,101,684	서울시 성동구 D 갑 제6호증 징수결정상세조회
	양도소득세(신고세액)	17,583,046	서울시 성북구 E 갑 제6호증 징수결정상세조회 갑 제11호증 양도소득세 신고서
	소계	304,684,730	
합 계		△42,684,730	

다. B의 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

B는 2020.11.02. 서울시 성동구 D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G은행 계좌로 총 2,300,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해당 자금은 대부분 타인에게 증여 등의 사유로 이체되었으며, B는 일부자금으로 2020.11.30. 서울시 성북구 E 소재 부동산을 매입 후 2021.3.25. 다시 매각한 사실이 있는데 해당 거래로 취득한 523백만원도 이 사건 현금증여행위 등으로 사용되어 현재 잔액이 남아있지 않는 바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금은 사해행위 당시의 적극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갑 제7호증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내역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서(D), 갑 제8호증 금전수취관련소명서(F), 갑 제9호증 입출금내역검토 및 입증자료, 갑 제10호증 금융조회내역(G은행))

마. 소결

4. 사해의 의사

B는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서, 지인의 자녀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250,000,000원을 증여하였고, 원고가 납세고지 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로 보아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5. 피고의 악의 추정

피고는 ①B의 오랜 지인의 자녀이고, ②B가 본인이 보유한 계좌를 이용하여 본인 스스로 거래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계좌로 이체받아 관리한 사실이 있으며 ③B에게 납세고지서가 2021.8.1. 송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1.8.14. 이 사건 증여를 하였는 바 그러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물랐다는 특별

한 사정이 있었다면 위 구체적인 정황들을 모두 반복할만한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2호증 금전수취관련소명서(A))

6. 제척기간

이 사건 사해행위일은 2021.8.14. 이므로 본 소 제기는 사해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이며, 사해행위를 안 날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악의를 안 것은 피고로부터 소명서를 수취한 2022.2.4. 이후이므로 1년의 제척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적법한 소제기라고 할 것입니다.

7. 원상회복(가액배상)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B의 이 사건 증여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원의 가액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